

해외건설협회 - 한국산업인력공단

# 업무협력 약정

Memorandum of Understanding



2010. 6. 30



해외건설협회  
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



한국산업인력공단  
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

## 업무협력 약정

해외건설협회(이하 "협회")와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"공단")은 해외건설산업에 관한 인력정보 교류와 취업 및 채용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다.

## 제 1 조 (목적)

본 약정은 "협회"와 "공단"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외건설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정보 교류, 그리고 이미지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전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협력사항)

협약 당사자인 "협회"와 "공단"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해외건설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취업난 완화
  2. 해외건설산업의 인력 알선 및 채용지원
  3. 해외건설산업의 홍보에 관련한 협력 및 인력정보 교류
  4. 세미나, 토론회 등 건설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의 사용
  5. 당사자 간의 각종 간행물 교류
  6. 기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 제 3 조 (유효기간)

1. 본 약정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.
  2. 본 약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일방 당사자가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만료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상기 의사 표시로써 본 약정은 협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3.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, 본 약정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#### 제 4 조 (변경 및 해지)

1. 본 약정의 중요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2. 협약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뒤 동의를 구할 수 있다.

3. 협약기간 중 상대방에게 명예와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는 통보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### 제 5 조 (불가항력)

"협회"와 "공단"은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테러, 시민봉기 및 기타 비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# 제 6 조 (일반사항)

1. "협회"와 "공단"은 성실하게 상호 기관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.

2. 본 약정의 각 조항에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의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,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.

3. 본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"협회"와 "공단"은 약정서 2부를 작성,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## 제 7 조 (비밀준수 의무 등)

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,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해외건설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 
회장 이재균 이사장 유재섭